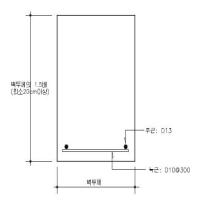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C - 64 - 2018

- (3) 비계의 작업발판에 벽돌, 블록 등의 자재를 싣는 경우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적재 하중이 400 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자재의 낙하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아래의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조적벽체 시공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, 벽체붕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설치하고 수평계, 수직내림추를 사용하여 수평, 수직도를 계측하고 점검하여야 한다.
- (5) 출입문, 창문 등의 개구부 상부에 조적벽체를 시공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함께 인방보를 설치하되, 인방보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cm 이상 길게 하여 개구부 양단부에 20 cm 이상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조적벽체의 개구부 폭이 1.8 m 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철근·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인방보의 높이는 20 cm 이상, 길이는 20 cm 이상 양단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. 특별히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<그림 1>과 같이 배근하여야 한다.
  - (나) 개구부 폭이 2.1 m 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> 철근·콘크리트 인방보의 배근도

(7) 조적벽체에 <그림 2>와 같이 테두리보를 설치할 때에는 철골 또는 철근·콘크리트 구조로 하되, 테두리보의 폭은 조적벽체 두께 이상으로 하고, 테두리보의 춤은 테두리보 폭의 1.5배 또는 30 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